

우정사업본부 노동자의
최근 3년간(2011~2013)
재해발생경위내역 분석
보고서 (요약본)

- 집배원노동자를 중심으로 -

I. 서론

○ 일상적인 질병, 빈발하는 사고, 위태로운 집배원노동자의 현실

2013년 10월 1일 우정사업본부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실시한 2013년도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일반행정서비스 부문 15년 연속 1위 위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¹⁾.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이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고품질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의 그럴싸한 포장과는 달리 ‘고객만족도 1위’라는 우체국의 실상은 질병이 당연시되고 사고에는 무감각해진 비참한 현실이었다. 2013년 12월 발표된 보고서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재해·직업병 실태 및 건강권 확보방안」은 21세기의 상식을 배반하는 집배원노동자의 가슴 아픈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연평균 3,379시간의 노동시간은 장시간노동으로 지탄받는 한국의 평균노동시간인 2,200시간의 1.5배에 달하고 있었다. 극단적인 장시간노동은 집배원노동자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었다. 집배원 두 명 중 한 명은 1년 내내 심근경색과 뇌졸중 고위험집단에 속했으며, 전체 집배원의 74.6%가 하나 이상의 부위에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었다. 과로로 인한 탈진은 이루어진 모든 조사들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었으며, 절반 이상의 집배원은 배달 과정에서 사고를 경험하고 있었다.

객관적으로 집배원의 노동안전보건 실태는 전국 꼴찌다. 다른 업종에서의 연구결과들과 비교했을 때 노동시간, 근골격계질환,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도, 탈진 정도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불명예스러운 1등’이다. 16,000명이 넘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게다가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렇게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집배원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현실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 반복되는 죽음,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집배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반복되는 죽음이라는 문제는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현장 집배원들도 나서서 심각성을 알려나갔다. 문제의 원인이 과도한

1) <우체국! 고객만족도 15년 연속 1위 달성 비결은?>(2013.10.1. 우정사업본부 보도자료)

물량에서 비롯되는 장시간노동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집배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그 결과 2013년 12월 19일에는 <장시간·중노동으로 인한 집배원 중대재해,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어 우정사업본부, 우정노조, 집배원 장시간·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논의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우정사업본부는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이 즉각적인 인력증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인력증원, 겸배 문제 해결, 초과노동 문제 해결 등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4년 1월, 또 다시 두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구조조정 이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집배원 한 분이 뇌출혈로 쓰러졌고, 다른 한 분은 사고로 뇌 손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아무런 대책 없이 또다시 업무량이 늘어나고 빙판길로 배달에 위험한 동절기를 맞게 되면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과 경고가 수차례 이어졌지만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은 까닭에 벌어진 일이다.

2014년 1월 10일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이 결성되었다. 중대재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낀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뜻으로 모인 것이다. 연대모임은 가장 직접적이고 무거운 잘못을 한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연대모임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및 우정사업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노동부에 우정사업본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연대모임의 고발 이후 고용노동부는 서울청의 몇 개의 우체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그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연대모임이 지적한 수많은 집배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위반혐의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미선임, 보일러실과 식당의 몇 가지 시설 미비 등 집배원노동자 중대재해 문제의 본질과는 무관한 몇 가지 형식적인 조사만을 진행한 것이다.

2014년 4월 고용노동부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대모임의 고발 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아프고, 다치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 현실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2011년에서 2013년까지 3년간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드러난 것만 1,182명의 집배원노동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고통받았고, 19명이 사망했다. 이는 전체 노동자 평균에 비해 4.3배나 더 많은 노동재해율이며, 6배 이상 높은 사망률이다.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진 집배원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는 더욱 심각하였다. 74.6%의 근골격계질환 유병율, 50%에 달하는 뇌심혈관계질환 고위험집단, 절반 이상의 사고 경험률 등은 대부분의 집배원노동자가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심층면접에 응한 집배원들은 ‘무거운 물건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적재하는 택배 업무로 인해 허리를 다치고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직원들이 많다’, ‘집배실에 먼지가 많아서 환풍기를 달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빙판길 오토바이 운행으로 교통사고 문제가 너무 많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에 대한 징계만 한다’, ‘헬멧, 무릎보호대, 오토바이 앞유리 등이 지급되지 않거나 사용하지 적절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등 수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는 문제를 은폐하고 해결책을 외면하고 있다. 관리감독해야 할 노동부는 우정사업본부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대모임이 요구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구에 대해 노동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연대모임은 1월 2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우정사업본부장에 대한 고발,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구 기자회견을 가진 후 직접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재해 실태 및 우정사업본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우체국 노동자의 중대재해 자료를 분석하고, 32개국 우체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현실을 파악하고자 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문제를 은폐하는 것은 당장을 모면할 수는 있어도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해결의 시작은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고, 연대모임은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판단한다.

II.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

I. 집배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1. 장시간·불규칙노동과 뇌심혈관계질환

1) 장시간 노동

2013년 12월 노동자운동연구소가 발표한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재해·직업병 실태 및 건강권 확보방안」에 따르면, 집배원노동자는 연평균 노동시간은 3,379시간으로 전체 노동자의 평균노동시간에 비해 1,100~1,200시간 이상 많은 초장시간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기에도 하루 노동시간이 10.8시간에 이르고 있으며, 특별기에는 하루 15.3시간에 이르는 장시간노동을 감내하고 있었다.

2) 짧은 휴식시간

평일 평균 휴식시간은 비수기, 폭주기, 특별기로 갈수록 오히려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수기, 폭주기, 특별기의 휴식시간은 각각 평균 47.2분, 44.6분, 37.3분으로 나타났다. 1일 노동시간은 바쁜 소통기간일수록 2~3시간 씩 증가하지만 휴식시간은 오히려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3) 장시간·불규칙노동의 또다른 원인 겸배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또다른 요인으로 겸배가 있다. 한달에 겸배를 하는 횟수가 6일 이상인 경우가 2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인당 한달 평균 5.7회의 겸배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노동시간은 8.6시간에 달했다. 여기에 더해 우정본부의 연가수당 감축 정책은 집배원노동자의 겸배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4) 달리는 시한폭탄

게다가 집배원노동자는 매일매일의 물량에 따라, 소통시기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불규칙노동을 하고 있다. 비수기에 비해 폭주기와 특별기의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12.6시간, 27.3시간 씩 증가하여, 집배원노동자의 90% 정도는 뇌심혈관계질환 위험의 시한폭탄을 안고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2. 고강도, 장시간노동에 의한 골병

1) 일만 끝나면 탈진하게 만드는 노동강도

집배원노동자의 개인적, 직업적 탈진 평균 점수는 각각 48.2점, 45.3점으로 그 어떤 연구에서보다 탈진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진은 직장생활 중에 쌓인 만성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고갈상태로 다양한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2) 집배원노동자의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매우 심각하다

한 개 이상의 부위에서 근골격계증상을 가진 ‘증상 호소자’가 74.6%였으며, 당장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심자’는 43.3%였다. 절반에 가까운 집배원들이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근골격계질환을 앓은 채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다.

집배원노동자와 다른 업종 노동자들의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 증상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 기존의 다른 업종 연구와 비교하여 거의 모든 신체 부위에서 집배원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증상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II. 집배원노동자의 노동환경

1. 사고다발 사업장, 우체국

절반 이상의 집배원이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수행 중 오토바이 및 차량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러 차례 연구가 진행된 퀵서비스 노동자, 배달 노동자 등 유사 직종의 교통사고 경험률을 상회하고 있다. 운수업종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사고의 위험이 높은 집단인데, 그 중에서도 집배원노동자의 사고경험률이 더 높아 고위험 집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축소·은폐되는 집배원의 노동재해·직업병

사고를 경험한 집배원이 50%를 넘을 정도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만, 사고 후 처리는 미흡하거나 집배원 부담으로 떠넘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교육이 있긴 하지만, 사고 시 공무상 재해를 먼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실제 처리 과정

에 들어서면 쉬쉬하는 내부 분위기가 형성되거나 개인 과실로 몰아가서 재해노동자를 위축시키고, 처리 과정 또한 미온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와 직업병이 다발하지만 상당부분 은폐되는 상황을 통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정본부 소속 집배원노동자의 재해자 규모는 2010년 216명, 2011년 300명, 2012년 35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재해율은 2.19로 전체 재해율의 3.7배에 달하고 있어 이들의 재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표 1 우정본부 소속 집배원노동자 공무상요양 현황

Ⅲ. 집배원노동자의 건강한 노동을 위해서

1. 인력충원을 통한 노동시간·노동강도 완화 필요
2. 노동재해·직업병 현황 파악을 통한 노동환경 재조명 필요

Ⅲ. 2011~2013년 집배원노동자 재해내역 분석

1. 집배원노동자 재해내역 개괄

공무원연금공단이 2014년 2월, 은수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우정사업본부 노동자(공무원)의 최근 3년간 재해발생경위내역을 파악하였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은수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비정규직 집배원노동자의 최근 3년간 재해발생경위내역을 파악하였다.

연도	우정사업본부 노동자(공무원)		비정규직 집배원 (별정직 + 상시)		우정사업본부 노동자 전체		
	사망	사고/질병	사망	사고/질병	사망	사고/질병	전체재해
2011	9	367	0	80	9	447	456
2012	8	395	1	90	9	485	494
2013	8	388	1	87	9	475	484
3년간 합	25	1,150	2	257	27	1,407	1,434
평균	8.3	383.3	0.7	85.7	9.0	469.0	478.0

표 1 최근 3년간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의 재해발생경위내역

[표 1]은 최근 3년간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의 재해발생경위내역이다. 2011년~2013년의 최근 3년간 전체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 중 1,434명이 노동재해로 인정받았고, 그 중에서 사망은 27명에 달했다. 매년 평균 478명의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에게 사망,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여 노동재해로 인정받고, 그 중 사망자는 9.0명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이다.

연도	정규직 집배원		비정규직 집배원 (별정직 + 상시)		전체 집배원 노동자		
	사망	사고/질병	사망	사고/질병	사망	사고/질병	전체재해
2011	5	292	0	80	5	372	377
2012	6	309	1	90	7	399	406
2013	6	305	1	87	7	392	399
3년간 합	17	906	2	257	19	1,163	1,182
평균	5.6	302	0.7	85.7	6.3	387.7	394.0

표 2 최근 3년간 집배원 노동자의 재해발생경위내역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 중 특히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재해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들 기능직 집배원과 비정규직 집배원노동자만 따로 분리하여 노동재해율을 분석하였다[표 2]. 전체 집배원노동자의 최근 3년간 인정된 노동재해는 총 1,182건이다. 사망재해인정 건수는 총 19건, 사고 및 질병은 총 1,163건으로 나타났다.

분류	전체 집배원 노동자 (정규직 +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 (2012년 기준)
노동자 수 (명)	15,491	15,548,423
노동재해 건수 (건)	394.0	92,256
노동재해율 (%)	2.54	0.59

표 3 집배원노동자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평균 통계 수치와 전체 노동자(2012년)와의 비교

[표 3]에서는 집배원 노동자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평균 노동재해건수 및 노동자 수에 대한 통계 수치를 가지고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노동재해율을 비교한 것이다. 노동재해율이 전체 집배원노동자가 2.54%, 전체 노동자가 0.59%로 4.3배의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2. 중대재해(사망재해)

지난 3년간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의 사망 재해 발생수준은 총 25명(비정규직을 포함하면 27명이다.)이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 전체의 연도별 사망만인율은 전체 노동자와 비교해서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와 뇌심혈관계질환인 것으로 나타난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만인율이 전체 노동자와 비교할 때 연도별로 130배~500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뇌심혈관계질환 또한 사망만인율의 경우 연도별로 비교할 때 5배~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고성재해도 마찬가지로 3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연도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				전체 노동자	
	사망원인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원인별)	사망만인율 (연도별)	사망만인율 (원인별)	사망만인율 (연도별)
2011	사고(급류)	1	0.320	2.9	0.010	1.3
	뇌심혈관계질환	4	1.278		0.194	
	교통사고	2	0.639		0.005	
	감염	2	0.639		n.a	
2012	뇌심혈관계질환	3	0.959	2.6	0.194	1.2
	교통사고	5	1.598		0.003	
2013	뇌심혈관계질환	4	1.278	2.6	n.a	
	교통사고	2	0.639			
	감염	1	0.320			
	간질환	1	0.320			

표 4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와 전체 노동자 사망만인율 비교

- * 주 1: 사망만인율은 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

$$\text{사망만인율} = \frac{\text{사망자수}}{\text{총 노동자수}} \times 10,000$$
- * 주 2: 우정공무원 인원은 2011년 말 정원 기준 31,291명을 적용.
- * 주 3: 2011년 산재보험 적용대상자는 14,362,372명. 2012년의 경우는 15,548,423명임.
- * 자료 :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현황분석」, 각년도.

한편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 재해의 핵심에 놓여있는 집배원노동자의 경우를 더 자세히 분석하였을 때 더욱 놀라운 결과를 보였다. 교통사고 사망만인율은 전체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정규직 집배원의 경우 200배~1,000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뇌심혈관계질환의 경우 전체 노동자에 비해 사망만인율이 6배~9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고성재해도 80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도	사망원인	정규직 집배원				비정규직 집배원	
		원인별		연도별		사망자 수	사망 만인율
		사망자 수	사망 만인율	사망자 수	사망 만인율		
2011	사고(급류)	1	0.852	4	4.259	-	-
	뇌심혈관계질환	3	2.555				
	교통사고	1	0.852				
2012	뇌심혈관계질환	2	1.701	6	5.102	-	-
	교통사고	4	3.401				
2013	뇌심혈관계질환	3	2.563	6	5.126	-	-
	교통사고	2	1.709				
	간질환	1	0.854				

표 5 정규직 집배원 사망만인율과 비정규직 집배원 사망만인율

* 주 1: 정규직 집배원 수는 2011년 11,741명, 2012년 11,761명, 2013년 11,704명으로 산정.

* 주 2: 비정규직 집배원 수는 2011년 3,772명, 2012년 3,751명, 2013년 3,745명으로 산정.

이렇듯 몇몇 요인이 크게 돌출되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자의 사망재해 요인이 다양한 반면, 집배원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교통사고나 뇌심혈관계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전체 사고성 재해의 5%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는 교통사고로 가장 많이 사망에 이른다. 하지만, 질병의 경우는 다소 다른데 전체 노동자가 가장 많이 사망에 이르는 질병이 뇌심혈관계질환이라는 점과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의 특징은 맞아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 특히 집배원노동자의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교통사고 위험과 뇌심혈관계질환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두가지 전략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1) 뇌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

승인 년도	지역	업무	재해 원인	기전
2011	부산	비배달	뇌심	* 신규업무 적응스트레스 * 결원 대체업무 * 무단결근자 징계에 대한 스트레스
2011	부산	배달	뇌심	* 결원발생 추가 배달 * 새주소 암기 압박 * 설 명절시 연일 야근(하루 12시간 이상_휴일없음)
2011	충청	배달	뇌심	* 다양한 업무를 맡음 * 설특송 업무 밤 11시까지 근무
2011	충청	배달	뇌심	* 책임이 높은 특별 송달, 내용증명, 계약등기 등의 우편 물 책임 * 경영평가 스트레스 * 예금, 보험, 우체국쇼핑 등 마케팅 목표 달성
2012	부산	배달	뇌심	* 18년 근속, 과도한 업무량. 6시 출근, 밤 늦게 퇴근
2012	서울	배달	뇌심	* 배달장소 고지대 * 설특송에 동료 유고로 하루 평균 13시간 노동(사망직 전 4일 간 특히)
2012	충청	비배달	뇌심	* 노조 지부장 활동 중 과로로 사망
2013	부산	배달	뇌심	* 12일간의 설특별 소통기간에 일 많이 함
2013	서울	배달	뇌심	* 2011년 말 뇌심질환으로 요양함 * 식사도 못할 정도의 바쁜 업무 중 2013년 사망
2013	전남	비배달	뇌심	* 체육행사 마라톤 후 쓰러짐
2013	전북	배달	뇌심	* 넘어지면서 뇌출혈, 고혈압으로 치료받다가 폐렴사망

표 6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 현황

그러나 자료가 제공하는 내용으로만 분석했을 때, 뇌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의 주요 원인은 ‘과도한 업무(장시간 노동)’, ‘신규업무로 인한 부담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의 업무는 ‘만성적 장시간 노동(절대적 인력부족, 겸배 등으로 인한 업무 증가)’, ‘설 특별기나 새주소 암기 등으로 인한 일정시기의 부담 증가’, ‘체육행사(마라톤)’과 같은 일시적 과로 등이 사망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정규직, 비정규직 집배원노동자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망자가 사고를 낸 경우이고, 두 번째는 사망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이다. 사고를 내게 된 상황이 기계결함(오토바이 오작동 또는 고장) 때문이 아니라면 노동자의 ‘판단력 감소’, ‘집중력 감소’ 등의 원인이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피로’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승인년도	지역	업무	재해원인	기전
2011	부산	비배달	교통사고	* 타차 중앙선 침범
2011	경인	배달	교통사고	* 회식 후 타차에 의한 피해
2012	경북	배달	교통사고	* 바리케이트를 보지 못해 부딪친 사고
2012	부산	배달	교통사고	* 오토바이와 함께 농수로에 추락
2012	부산	배달	교통사고	* 타차 불법유턴에 충돌
2012	부산	비배달	교통사고	* 타차 중앙선 침범 후 충돌
2012	서울	배달	교통사고	* 타차와 추돌
2013	경인	배달	교통사고	* 출근 중 방호벽 부딪침
2013	전남	배달	교통사고	* 뒤에서 타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음
2012	경인	배달_비정규직	교통사고	* 오토바이 버스충돌
2013	경인	배달_비정규직	교통사고	* 타차 중앙선 넘어 충돌

표 7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의 교통사고 사망 현황

3) 기타 원인에 의한 사망

기타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감염이 가장 많고 기타 간질환이나 급류에 휘말리는 사고 등이다. 감염의 경우 대부분 면역력 저하 때문에 발생하는 기전 상의 특징을 살펴볼 때 역시 ‘피로’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간질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전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비교집단보다 현저히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의 교통사고와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은 ‘과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3. 직업 관련성 질환 및 사고성 재해

1) 직업 관련성 질환 내역

① 뇌심혈관계질환

○ 집배원노동자의 뇌심혈관계질환 발생내역 분석

연도	정규직 집배원		비정규직 집배원	전체 집배원 노동자	전체 집배원 수
	사망	질병			
2011년도	3	7	0	10	15,513
2012년도	2	5	0	7	15,512
2013년도	3	7	0	10	15,449
3년간 합	8	19	0	27	-
평균		9	0	9	15,491

표 8 최근 3년간 집배원노동자의 뇌심혈관계질환 발생경위내역

정규직의 집배원 노동자만 따로 분석해 보면, 최근 3년간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한 사례는 8건, 공무상 요양을 한 사례는 19건이었다.

분류	전체 집배원노동자 (정규직 +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 (2012년 기준)
노동자 수 (명)	15,491	15,548,423
뇌심혈관계질환 (건)	9	579
뇌심혈관계질환 만인율 (‰)	5.8	0.3

표 9 집배원노동자와 전체 노동자(2012년)와의 뇌심혈관계질환 만인율 비교

집배원노동자의 최근 3년간 뇌심혈관계질환 발생 평균과 전체 노동자(2012년)와의 뇌심혈관계질환 발생 만인율을 비교한 결과, **집배원노동자의 뇌심혈관계질환 유병률이 19.3배 높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동자운동연구소의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재해·직업병 실태 및 건강권 확보방안」 보고서에서는 집배원노동자의 초장시간 노동(연평균 노동시간은 3,379시간)과 소통시기마다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불규칙노동, 과도한 견배 등의 집배원 노동실태를 지적했다. 또한 이

러한 노동환경이 ‘집배원노동자의 90% 정도가 뇌심혈관계질환 위험의 시한폭탄을 안고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보고서의 지적은 단지 우려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실제 19배가 넘게 집배원노동자에게 뇌심혈관계질환이 발생하고, 죽어나가고 있었다.

○ 집배원노동자의 높은 뇌심혈관계질환 유병률 원인 분석

업무관련 뇌심혈관질환의 발병기전은 사고성, 과로성, 한시적 스트레스성, 만성 스트레스성 등 대개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²⁾. 집배원노동자에게는 장시간 노동에 의한 과로와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을 그날 모두 배달해야 하는 스트레스, 배달을 하면서 고객과의 대면 스트레스 등 직무스트레스가 뇌심혈관계질환 유병률을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은 △주 60시간 이상 노동으로 뇌심혈관계질환 4배, △하루 11시간 이상 노동으로 심근경색 2.9배, △주당 5시간 이상의 초과노동으로 5년 이내에 사망 가능성 2배 이상,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뇌심혈관계질환 2~3배 증가를 야기한다.

이와 같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반 노동자에 비해 뇌심혈관계질환의 유병률이 19배 높게 나타난 결과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오히려 공무상요양이나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고 은폐된 사례들까지 고려해 보면 더 많은 집배원 노동자들이 뇌심혈관계질환으로 고통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료들을 떠나보내며 안타깝기도 하지만, 자신에게도 닥쳐올 미래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매일매일 장시간노동을 감내하고 있을 것이다.

²⁾ 박정선. 근로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고찰. 대한산업의학회지 제17권 제4호, 2005.12, 288-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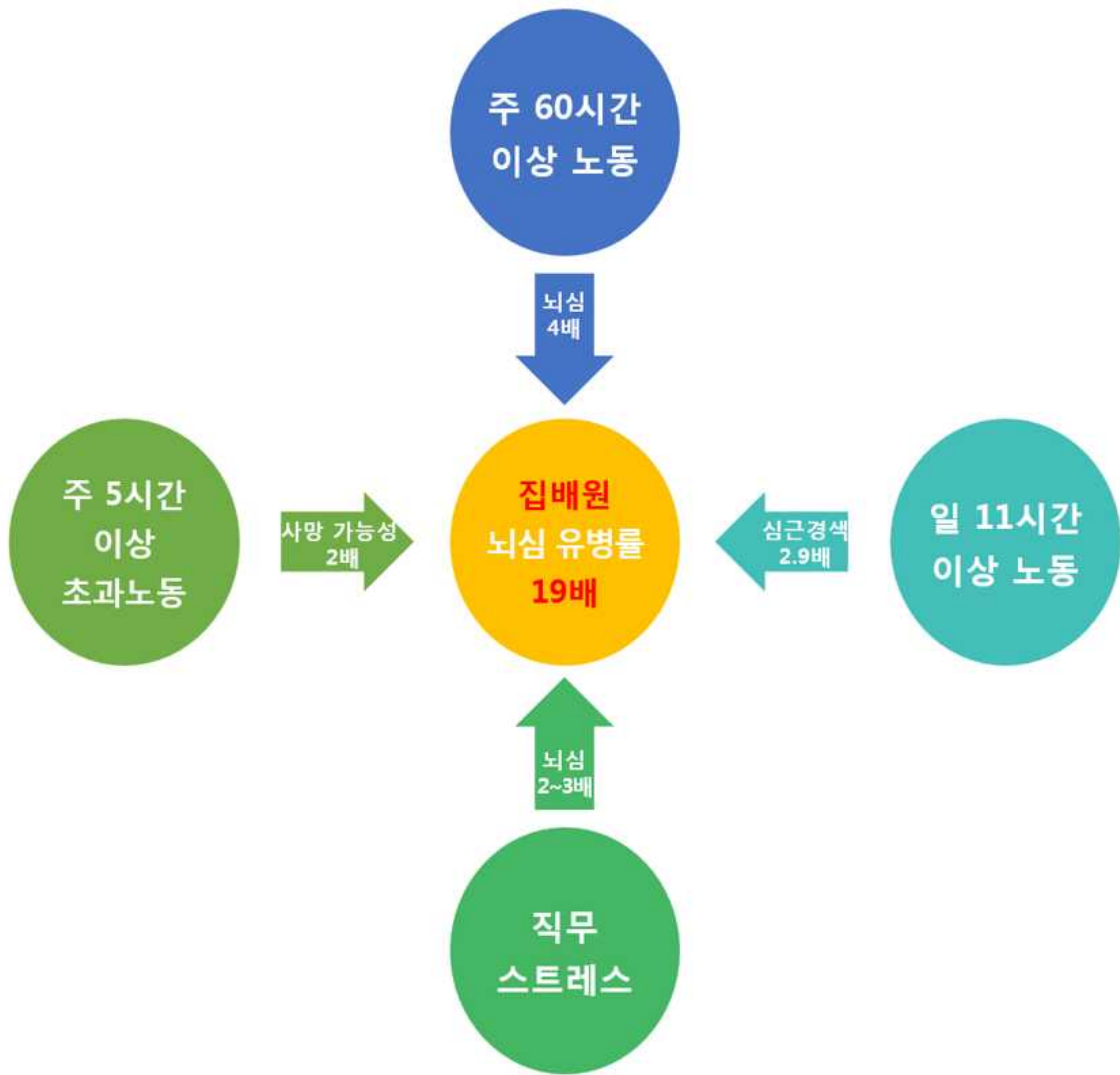


그림 1 집배원노동자의 뇌심혈관계질환 유병률 증가 요인

② 집배원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발생내역 분석

연도	정규직 집배원	비정규직 집배원	전체 집배원 노동자	전체 집배원 수
2011년도	36	9	45	15,513
2012년도	34	8	42	15,512
2013년도	90	8	98	15,449
3년간 합	160	25	185	-
평균	53.3	8.3	61.7	15,491

표 10 최근 3년간 집배원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발생경위내역

정규직의 집배원노동자만 따로 분석해 보면, 최근 3년간 근골격계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한 사례는 160건이었다. 비정규직 집배원 노동자의 경우는 최근 3년간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인정이 된 사례가 25건이었다.

분류	전체 집배원 노동자 (정규직 +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 (2012년 기준)
노동자 수 (명)	15,491	15,548,423
근골격계질환 (건)	61.7	5,327
근골격계질환 만인율 (‰)	39.8	3.43

표 11 집배원 노동자와 전체 노동자(2012년)와의 근골격계질환 만인율 비교

집배원 노동자의 최근 3년간 근골격계질환 발생 평균과 전체 노동자(2012년)와의 근골격계질환 발생 만인율을 비교한 결과, 집배원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유병률이 11.6배 높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사고성 재해 내역

① 교통사고

2011년~2013년의 최근 3년간 우정사업본부 노동자의 재해발생경위내역을 분석한 결과 집배원이 가장 빈번하게 당하는 재해는 ‘교통사고’였다. 사망 9건, 사고 643건으로 54.4%의 재해율을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가 일어난 것이 즉각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은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해율 집계도 다른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집배원 본인이 사고를 낸 경우는 ‘개인 과실’로 처리되어 심각하게 다치지 않고서는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공무상요양/산재를 바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병을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집배원의 교통사고 경험률은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도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과적, 과도한 물량’으로 인해 위험이 배가되기 때문이다.

(사례2) 경북지방우정청 구룡포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2011.08.19.(금) 15:40경 우편물 배달을 위해 이륜차로 이동하던 중,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놀태2리 천주교 앞 사거리에서 도로에 있는 모래를 발견하지 못하고 좌회전하다가 이륜차와 함께 넘어지면서 '무릎'을 부상하였으나, 자가치료를 하고 계속 근무를 하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진찰결과 '좌슬개골 및 경골외과 연골손상' 등으로 진단받음.

본인이 사고를 내는 경우들은 대체로 예방이 가능한 것들이다. 사고가 났을 경우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유인력이 존재한다면 더 큰 병을 부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과적의 경우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교통사고 예방법이 ‘교통법을 잘 지키자’ 수준에만 그칠뿐더러 보호구 지급도 제대로 되지 않아 실제 재해율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

② 기상악천후 기인재해(빙판, 눈길, 폭우)

집배원이 두 번째로 많이 당하는 사고는 사망 1건, 사고 202건인 기상악천후에 기인한 재해였다. 폭우, 폭설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워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기상악천후의 경우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여겨지기 쉽다. 하지만 폭우, 폭설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권’을 통해 사전에 예방해야 하지만 실제 이를 시행하는 우체국은 거의 없다. <우체국은 악천후시 작업 중지 등 조치를 취합니까?>라는 질문에 ‘안전운행하라는 문자는 오지만 귀국하라는 이야기는 없다’, ‘눈이 7~10cm 쌓여도 일단 나간다. 빨리 귀국하

라고 하지만 일을 시작한 상황에서 어렵다. 다음 날 일이 두배가 되니까' 등의 대답이 현실을 드러내준다. 사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지 않은 것은 분명 사업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3) 기타 재해 내역

① 병원 방문 지연

최근 3년간 우정사업본부 노동자의 재해발생경위내역을 분석한 결과 병원 방문 지연 및 미룸으로 인해서 병이 악화된 경우가 142건(12%)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일이 너무 바빠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병원 방문을 지연하고 있다. 특별소통기가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다쳐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완치가 되지 않았음에도 나와서 일을 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단순하게 생각되는 교통사고, 근골격계질환들은 바로 치료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무상재해/산업재해 신청을 채 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 재해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사례9) 12월 3일 4명분의 견배를 하구 나서 제 배달구역으로 이동하여 배달 중, 주유를 마치고 나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어요. 일주일 입원 후 출근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로 받아서 어쩔 수없이 출근하였지요! 처음에는 내근 작업만 하라더니 명절 다가와서 팀원들이 고생 한다고 배달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릎보조기 차고 설날특별소통기간에 일했습니다. (2014년 설특별소통기 사고사례)

② 우체국 내 재해

우체국 내 재해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최근 3년간 공무상재해/산업재해로 처리된 것은 42건으로 나타난다. 우체국 내 관리 소홀, 파렛 사고 등이 주되게 일어나며, 집배원 뿐만 아니라 우체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모두 위험요소가 된다. 우체국 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이 전반적으로 미비한 수준에 있음을 보여준다.

(사례10) 강원지방우정청 삼척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2011.06.08.(수) 09:30경 리프트에 진입이 불가능한 웅바디 우편차량이 도착하여 삼척우체국 주차장에서 동료 집배원들과 파렛을 들어내리던 중, 파렛용기불량으로 잠금장치가 열리면서 우편물이 상병인의 얼굴로 쏟아지는 바람에 파렛을 놓쳐 파렛 밑부분이 왼쪽발에 부딪혀 부상함.

③ 과적, 과도한 물량기인재해

과적, 과도한 물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는 126건으로 10.7%에 달한다. 과적, 과도한 물량은 오토바이 사고, 우체국 내 파렛 사고(사례12) 등으로 이어지는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사례12) 2010년 12월 21일 04시 15분경 소포가 가득 적재된 파렛을 보관장소로 이동하던 중 튕겨져 나온 파렛문에 안면부를 강하게 부딪혀 보철한 치아가 파장되는 상처를 입음.

하지만 인터뷰 결과 우체국에서 과적에 대한 제재 혹은 관리를 특별히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적, 과도한 물량을 실어도 빠듯하게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모두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가 날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예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집배원들의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를 제재하지 조자 않는 것은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들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IV. 산업안전보건법규 위반 여부 요약

1. 서론

- 본 장에서는 앞서 조사한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의 최근 3년간의 재해발생경위를 토대로 우정사업본부의 산업안전보건법규 위반 여부를 분석한다.
- 분석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들에게 형식적인 규정으로 인식되어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 사업장을 찾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원인은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관리 감독과 검찰 및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산업재해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와 검찰, 법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우정사업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1차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자임과 동시에 정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공식적으로 집계된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의 재해가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수백건을 넘어섰고, 재해발생 경위서를 살펴보다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다.

2.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규정

-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을 기준으로 법 위반여부를 분석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1882호 일부개정 2013. 06. 12.)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5251호 일부개정 2014. 03. 12.)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99호 일부개정 2014. 03. 1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고용노동부령 제78호 일부개정 2013. 03. 23.)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38호)

-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63호)
- 산업안전보건 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 고시 제2010-35호).

3. 각 재해 분류별 산업안전보건법규 위반 사항

1) 기상상태 불안정(폭우·빙판·눈길 등)으로 인한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는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7조는 법 제26조의 작업중지 상황을 좀 더 세분화 하여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예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폭우, 폭설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중지시키지 않아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업무중지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 근골격계 질환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5호에서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은 대표적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을 규정하여 사업주에게 특별한 보호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38호)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이 하는 업무는 거의 대부분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관하여 사업주는 ① 유해요인의 조사 및 개선 및 ②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의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부여된다.

○ 하지만,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의 재해발생경위 및 면담조사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와 달리, 우정사업본부 사업장에서는 관련 규정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 대표적인 위반 사항으로, 우정사업본부는 근골격계부담업무 유해요인 조사과정에서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조사, 인간공학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해 시행되지 않았고(규칙 제658조 위반), 유해요인 조사 이후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시설등 필요한 개선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규칙 제659조 위반), 근골격계질환자가 최근 3년간 226명이나 발생하였음에도 체계적인 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시행한 적이 없고(규칙 제662조 위반), 우편물의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경우에도 중량물을 제한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규칙 제663조 위반),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에 대해 물품의 무게나 무게중심을 표시하거나 적절한 보조도구를 지급하지도 않은 점(규칙 제666조 위반) 등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 하고 있는 규정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2장 이하 관련 규정들이므로, 이러한 각 개별규정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죄에 해당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는 동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처벌규정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 규정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는 동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3)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은 대부분 오토바이를 타고 우편물을 배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최근 3년 동안 재해발생 경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보호구의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33조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보호구의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의 면담조사결과에 따르면, 오토바이 보호구를 지급하긴 하지만 제때 교체해 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헬멧 이외의 보호구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곳도 많았다. 교통사고의 경우, 운행자의 과실여부가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과적, 과속, 신호위반 등을 할 수밖에 없는 업무의 과중과 인력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충분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는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였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한다.

○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 관리하는 것과 과도한 업무로 야기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중 하나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처해진다.

4) 우체국 내에서 발생한 재해

○ 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의 관리범위 내에 있는 작업장으로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장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

○ 하지만,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의 최근 3년간의 재해발생경위 및 면담조사결과에 따르면, 우편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작업장 바닥의 케이블 등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문틈에 손이 끼여 부상하거나, 새벽 무렵 하역장에서 우편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두운 통로를 지나다가 부상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 사업주가 작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중 하나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처벌규정은 전항과 동일하다.

5) 심혈관계 질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는 노동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 사항을 정하고 있다.

○ 하지만,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의 면담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적이 거의 없거나, 건강검진 과정에서 문진표를 작성하는 등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고,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한 건강진단, 상담 및 뇌심혈관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에게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요양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조차 과도한 스트레스 및 과로를 발병요인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평가조차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 근본적으로는 과도한 작업량으로 인한 장시간·중노동에 따른 육체적 피로, 지속적인 운전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이를 방치한 것이 위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보건조치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 하고 있는 규정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는 동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처벌규정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 규정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는 동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 사무실 내 건강장해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호 및 제6호에서는 사무실 내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와 환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필요한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의 면담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우체국 내 집배실의 경우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있는 공간이 많고, 실제 우편물 분류작업을 하는 경우 우편물 자체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무실 내 공기를 측정 및 평가하여 공기정화설비가 가동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의 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오염물질중 하나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분진’에 관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어떠한 보건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규칙 위반으로 평가된다.

2) 산업재해 누락보고 및 허위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 발생 개요, 원인 및 보고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의 면담결과를 토대로 볼 때, 실제 업무수행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이를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5. 결론

○ 산업안전보건법의 1차적 의무자인 사업주이자, 대표적인 공공영역에서의 정부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2차적 의무자이기도 한 우정사업본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요구하는 가장 기초적인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 구체적으로, ①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노동자에게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② 대표적인 “근골격계부담작업장”이면서, 지난 3년간 공식적으로 인정된 근골격계질환자가 200명을 넘어설 정도의 근골격계질환 다발사업장임에도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 방지를 위해 법에서 요구한 가장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준수하지 않았으며, ③ 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평가조차 실행하지 않았고, ④ 보호구의 지급, 작업장의 관리, 사무실 내 건강장해 예방조치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해서도 모두 법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 무엇보다, 우정사업본부 내에서 발생하는 상당수의 산업재해가 살인적인 업무량과 기형적인 노동조건 때문에 실제 통계에 보고되지 못하고 은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각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 위와 같은 우정사업본부의 현실은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인력부족으로 인한 장시간·중노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우정사업본부로 하여금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쓰게 한 근본적인 원인임과 동시에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 객관적인 요양근로자들의 재해경위서 기재내용 만으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정사업본부 및 전국 우체국을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V. 개선방안 및 요구사항

1.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1) 우체국, 재해의 위험이 상존하는 공간

- 인력부족과 과중한 노동강도, 비정규직 활용은 우편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집배원노동자들의 노동재해는 1,182건에 이르며, 사망은 19건에 달했다. 우체국은 장시간 노동, 과도한 물량 등 노동자가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해칠 정도의 노동강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상존하고 있는 곳이며, 또한 우체국 내가 아닌 국외 근무가 노동의 주를 이루는 집배원노동자의 경우 기상상태의 악화로 인해 위험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 우체국의 노동재해 유형에서는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많고, 기상악천후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노동강도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뇌심혈관계질환이 많고, 근골격계질환 역시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재해 유형이 발생하고 있고, 그 원인이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노동강도, 그로 인한 업무스트레스 등에 있음에도 우정사업본부의 안전보건 조치는 형식에 치우쳐 실질적인 노동자 건강권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 개인에게 떠넘겨지는 재해의 책임

- 우체국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우체국 내에서보다는 외부에서 다수 발생하는데, 이는 과도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압박이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에게 강요되고 있어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치부되기도 하는데, 근본적 원인은 업무를 서둘러 수행하고자 한 노동자가 아니라 그를 강요하는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의 인력관리 구조에 있다. 따라서 집배원노동자가 겪는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 여부를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노동재해라는 기본 관점에서 보상과 치료가 담보되어야 하며, 사고를 빈발하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 특히, 악천후 속에서도 일을 해야 하는 집배원노동자들은 위험에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 형식적으로 귀국 조치를 취하더라도 모든 책임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져 있기에 집배원노동자들은 악천후를 감수하고 일을 마무리 할 수밖에 없다.
- 감독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무리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게 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안전보건조치의 부실이나 노동자에게 재해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3) 숨겨진 노동재해

- 숨겨진 노동재해 및 재해의 은폐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지난 노동자운동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집배원노동자들 가운데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은 74.6%에 이르렀으며, 당장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심자도 43.3%에 달하였다. 지난 3년간 근골격계질환으로 판명된 사례가 226건이지만 업무를 하면서 골병드는 노동자들은 이를 훨씬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
- 또한, 노동재해는 의도적으로 혹은 노동자들의 비자발적 의사에 의해 숨겨지기도 한다. 지금까지 경영평가로 인해 재해가 상당수 은폐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평가항목에서 삭제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현실적으로 얼마나 현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인력부족 상태가 유지되는 한 자신의 건강을 위한 휴식이나 치료에 필요한 요양 등이 다른 노동자의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집배원노동자들은 참고 일할 수밖에 없다.
- 숨겨진 노동재해를 제대로 드러내야만 노동재해의 실 규모가 확인되고, 안전보건조치의 심각성과 시급성이 제대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재해의 규모가 확인되어야 근본적 처방을 찾는 노력 또한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4) 우정사업본부의 책임 회피와 노동부의 눈감아주기

- 연대모임은 2014년 1월 2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우정사업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노동부는 연대모임의 고발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제시했고,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비공개결정을 내렸으며,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그러나 노동부가 몇몇 우체

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연대모임의 고발 내용에 맞는 실질적인 조사를 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 연대모임이 진행한 조사에서는 우체국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태를 주요 질환 및 사고로 분류하여 검토했으며, 객관적인 요양근로자들의 재해경위서 기재내용 만으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정사업본부 및 전국 우체국을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5) 특별근로감독을 통한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예방 조치가 시급하다

-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노동자들을 사고와 골병으로 몰아넣으면서도 장시간 중노동 구조를 유지하면서, 무수한 노동재해를 숨기고 있다. 숨겨지고 은폐되는 노동재해를 끄집어내고, 안전한 노동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체국의 노동환경 실태조사가 매우 시급하다. 그리고 이 조사는 형식적인 서류의 조사나 교육 실시, 보호 장구 지급 등이 아니라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위험을 야기하는 각종 요인들을 제거하여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숨겨진 재해는 형식적인 조사만으로는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 재해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수시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동 환경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문제의 해결은 어렵다.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특별한 조치와 감독이 필요하며, 특별근로감독을 통한 대대적 점검으로 집배원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시급히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2. 인력충원을 통해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3. 정부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집배원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